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한글 및 영문글자체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 가능한가요?

•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2항)
따라서 하나의 출원으로 한글 글자체와 영문자 글자체, 한글 글자체와 한자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와 특수기호 글자체 등을 함께 출원하는 경우는 1디자인 1출원 원칙에 위배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도면은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이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입체디자인 도면) 및 제5호(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에 의해 작성하며 농묵 또는 제도용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또는 그 이상의 도면을 기재해야 하며 도면을 3차원 이미지 형태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첨부한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을 참고도란에 추가합니다.

•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 직물이나 벽지 같이 평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평면디자인 도면은 동일 축적에 의하여 작성한 표면도와 이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합니다. 또한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첨부한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 단면도, 절단부단면도, 확대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을 참고도란에 추가합니다.

•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10cm×세로15cm 이하, 최소 가로7cm×세로10cm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파손 또는 용이하게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할 것
 -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할 것
 -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 및 견본의 사진(입체적인 것은 사시도와 6면도 사진, 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1통을 각각 서식에 부착하여 제출할 것

※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작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의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서식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